

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 3. 15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)

□ 제안이유

-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 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,
- 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에 대해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부천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부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.(안 제2조제6호, 신설)

나.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4항)

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휘를 정비한 사항임.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제11조에 따른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부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하 “지역축제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심의

7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촉하는 자가 된다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“소재하는”을 각각 “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간사 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직무를 통괄”을 “업무를 총괄”로 한다

제6조제2항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지명하는 자가”를 “지명하는 사람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에 부의 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요청하며,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”을 “필요한 사항은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67호
의결 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2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 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,
- 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에 대해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부천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부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.(안 제2조제6호, 신설)
- 나.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4항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휘를 정비한 사항임.

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제11조에 따른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부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하 “지역축제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심의

7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촉하는 자가 된다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“소재하는”을 각각 “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간사 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직무를 통괄”을 “업무를 총괄”로 한다

제6조제2항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지명하는 자가”를 “지명하는 사람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에 부의 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요청하며,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”을 “필요한 사항은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11조에 따른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-- ----- ----- 필요한 ----- ----- --.</p>
<p>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령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따라 해당 ----- -----</p> <p>6. 부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하 “지역축제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심의</p> <p>7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</p>
<p>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----- 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</p> <p>8.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</p> <p>9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간사 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위촉</u> <u>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있는</u> -----</p> <p>8. ----- <u>있는</u> ----- 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간사 1명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 (임기)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</u> -----.</p>
<p>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<u>직무를 통할</u> -----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<u>업무를 총괄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<u>5일전까지</u>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5일 전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<u>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<u>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<u>부의 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지명하는 사람이</u>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<u>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제9조 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0조 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④ <u>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요청하며,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예산의 범위에서 -----.</u></p> <p>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해당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 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수당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 (위임규정)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	<p>제14조(위임규정)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사항은 위원장</u> ----- -----.</p>

<관계법령발췌서>

○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07.01.26>

②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<개정 2007.01.26>

1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4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5.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

○ 공연법

제11조 (재해예방조치)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9.27>

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9.27>

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공연법 시행령

제9조 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
2.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,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>

[전문개정 2002.7.30]